[한화투자증권]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심사필 제 2026-658 호 [심의일 : 2026.09.23]

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매매거래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.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

금 현물시장 매매거래 핵심(요약) 설명서

※ 이 설명서는 한화투자증권의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 (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설명서 본문 참조)

■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

- 현물은 금지금(金地金) 중 한국거래소가 정한 품질 및 외형요건을 만족하는 순도 99.99%, 중량 1kg 또는 100g 인 골드바(Gold bar)를 말합니다.
- 품질인증기관(한국조폐공사)의 기술요건 심사 및 한국거래소의 외형요건 심사 등을 거친 생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골드바 또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해외 브랜드(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)의 골드바 만을 거래합니다.

■ 유사상품과의 비교표

구분	금현물	장내파생상품 (금선물)	국내주식
법적 성격	금 현물 (원금손실 가능)	파생상품 (투자원금 초과손실 가능)	증권 (원금손실 가능)
만기	없음	있음	없음
주요 상품	골드바 등	코스피 200 선물·옵션 등	코스피 200 종목 등
거래 대상	매도·매수 가능	매도·매수가능	매도·매수가능
특징	거래조건 표준화, 일중가격제한폭 존재	기초자산, 거래단위, 만기 등 표준화	거래조건 표준화, 일중가격제한폭 존재

■ 발생 가능한 불이익 및 투자자 유의사항

▶ 발생 가능한 불이익

- 금은 과거 화폐적 기능을 담당하여 국내외 경제 급변 상황에서 중요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금융위기 등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금가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.
- 금지금(골드바)의 가격변동에 따른 매매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
- 이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.
-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
▶ 투자자 유의사항

- 금지금(골드바)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6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 현물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
- 금 실물의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본인 소유의 금지금(골드바)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공급가액 (평균 매수단가에 실물 인출 수량을 곱한 가액)의 10%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주문·체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위탁매매수수료, 실물인출 시 납부하는 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는 10%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.
-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이외에 계좌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

▶ 투자위험등급 : 없음

- 금 현물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별도의 투자위험등급이 없습니다.

■ 민원 및 상담 연락처

- (민원 등 처리방법)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지원센터(080-851-8282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, 금융투자협회(2003-9423)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[한화투자증권]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심사필 제 2026-658 호 [심의일 : 2026.09.23]

금 현물시장 매매거래 설명서

※ 본 설명서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대상이 실물(Physical goods)인만큼 그 구조나 위험 등에 있어서 주식, 채권,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
따라서,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시려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본 설명서 및 관련법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목 차 -

I.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의 위험성
1. 가격변동 위험
2. 금의 화폐적 기능에 따른 위험

II. 금 현물시장 개요
1.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
2. 주요 거래제도
3. 거래방법
4.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조세 관련 유의사항

III. 기타

한 화 투 자 증 권

I.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의 위험성

1. 가격변동 위험

□ 금지금(골드바)의 가격변동에 따른 매매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2. 금의 화폐적 기능에 따른 위험

□ 금은 과거에 화폐적 기능을 담당하여 국내외 경제 급변 상황에서 중요 한 대외 지급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금융위기 등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금가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.

II. 금 현물시장 개요

1.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

본 설명서 상의 금 현물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(“KRX금시장” 이라 함)을 의미하며,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일반회원(증권회사, 선물회사 등)에 대한 매매거래 위탁을 통해 동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를 의미합니다.

2. 주요 매매거래 제도

가. 매매거래 대상

□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 제1항에 따른 금지금(金地金) 중 한국거래소가 정한 품질 및 외형요건을 만족하는 순도 99.99%, 중량 1kg 및 100g인 골드바(Gold bar)를 말합니다.

□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적격 금지금 생산업자가 생산하거나 적격 금지금 수입업자가 수입한 금지금(골드바)로서 순도, 중량, 브랜드, 제조일련 번호 등이 각인되어 있습니다.

* 골드바(Gold bar) 품질 관리

- 국내에서 생산된 골드바 : 품질인증기관(한국조폐공사)의 기술요건 심사 및 한국거래소의 외형요건 심사 등을 거친 생산업자가 생산한 골드바만 거래
- 해외에서 수입되는 골드바 :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해외 브랜드(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)의 골드바만 거래

나. 매매거래, 호가수량, 실물인출 단위

□ 매매거래단위 및 호가수량단위는 1g이고 호가가격단위는 10원이며, 1g당 원화(예: 50,000원)로 가격을 표시하고 1회에 최대 5,000g(5kg)까지 호가가 가능합니다.

□ 실물인출단위는 종목에 따라 1kg 또는 100g입니다.

다. 매매거래 및 호가접수 시간

□ 매거래시간: 09:00 ~ 15:30 (호가접수시간 : 08:30 ~ 15:30)

- 시가단일가 : 08:30 ~ 09:00
- 접속매매 : 09:00 ~ 15:20
- 종가 단일가 : 15:20 ~ 15:30

□ 매매거래 개시 전 30분간 시가 단일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를 받고 매매거래 종료 전 10분 동안 종가 단일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를 받으며, 그 이외에는 접속매매 체결을 위한 호가를 접수 받습니다.

라. 호가의 종류 등

□ 호가는 지정가호가(종목, 수량,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)만 가능하고 전량충족조건(FOK : Fill or Kill) 또는 일부충족조건(IOC : Intermediate or Cancel)의 호가 조건 부여도 가능합니다.

□ 호가는 접수 시점부터 매매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일 장종료시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.

□ 금 실물사업자의 생산 등을 위해 필요한 즉시 수요를 고려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 한하여 금 실물사업자에게 동일한 가격에서 우선 체결권을 부여합니다.

마. 호가의 제한

□ 호가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상하 10%이고 기준가격은 전일 종가이며 전일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기준가격이 됩니다.

□ 전산시스템 장애 또는 매매거래 폭주로 매매거래가 중단될 경우에는 모든 호가접수의 제한이 가능합니다.

바. 매매체결 방식

□ 시가, 종가 결정 시 및 매매거래 중단 후 재개 시 최초 가격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방식으로 체결되고, 그 이외의 매매거래는 복수가격에 의한 경쟁매매(접속매매)방식으로 체결됩니다.

□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서는 가격·매매목적·시간우선의 원칙, 복수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서는 가격·시간우선의 원칙으로 체결됩니다.

사. 결제방식

□ 매매거래 후 금 현물시장의 결제일은 매매거래가 체결된 당일이며, 오전 및 오후 2회(10시경, 16시경)로 나누어 결제합니다.

□ 결제 후 매수자는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금지금(골드바)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게 되고 매도자는 현금을 이체받게 됩니다.

아. 실물 인출

□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금지금(골드바) 중 본인의 지분 에 대해 종목별 인수도단위(1kg 또는 100g)로 인출이 가능합니다.

□ 인출 예정일 오전 10시까지 당사 영업점에 실물 인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당일 오후(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한 시간)부터 실물수령이 가능하며, 실물수령 장소는 한국예탁결제원 서울분원(여의도 소재) 및 당사의 영업부 입니다.

- 오전 10시 이후 신청시 다음날 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한 시간부터 실물수령이 가능합니다.
- 실물인출 신청 및 수령시 실물수령 가능시간 및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실물인출 취소는 인출신청 당일에 한하여 가능하나, 한국예탁결제원에 부가세 납부된 거래는 실물인출 취소가 불가합니다.
-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한번 인출된 금지금(골드바)은 다시 입고하여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시킬 수 없습니다.

□ 금지금 실물 인출을 신청하고 금지금 인출 수령 예정일에 금지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
3. 거래방법

가. 주문의 방법

□ 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시장과 동일하게 전자통신(회사와 전자통신방법에 따른 계약을 사전에 체결한 경우 MTS, HTS 등), 전화, 문서 등의 방법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.

□ 금 현물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적격금지금 생산업자 및 적격금지금 수입업자가 매도한 금지금(골드바)만 거래되므로,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매도할 수 없음에 따라 최초 매매거래는 매수부터 가능합니다.

□ 고객이 금 현물시장에서 매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 중인 금에 대한 매도는 금 현물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고, 그 외의 방법으로는 매매,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.

나. 위탁증거금 납입

□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전액 회사에 예탁하여야 하고(현금 위탁증거금률 100%),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 중인 금지금(골드바) 한도 내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.

4.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조세 관련 유의사항

가. 금 현물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

□ 금지금(골드바)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금 현물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

나. 금 실물 인출시 부가가치세 납부

□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본인 소유의 금지금(골드바)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공급가액(평균매수단가에 실물 인출 수량을 곱한 가액)의 10%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
다.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

□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르면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해 회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회사에 주문·체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위탁수수료 및 실물인출시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10%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
라.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(사업소득세) 신고

□ 「법인세법」 및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금 현물 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자 및 사업소득자의 경우 법인세(소득세)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III. 기타

가. 수수료에 관한 사항

□ 회사는 위탁자로부터 주문수탁 및 금지금(골드바) 실물 인출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.

□ 고객은 위탁수수료율 및 인출수수료 등을 회사 홈페이지(www.hanwhawm.com > 고객센터 > 업무안내 > 수수료안내 > 금현물 및 업무수수료/예탁금이용료)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나. 중도해지 가능여부 : 가능

중도해지 (유동성 위험)	중도해지 불가	중도해지시 비용발생	중도해지 허용
			○

* 청산관련 수수료, 세금 외 금현물 계좌 해지시 별도 비용 없음

다. 장외 계좌간 대체금지

□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이외에 계좌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

[주의]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

[설명직원 확인]

한화투자증권 _____지점 (직책) _____(은)는

해당 매매거래에 대해 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설명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설명직원: (인/서명)